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산업수출진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12. ~ 3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2025년 4월 30일”을 “2027년 4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5 제2호 중 “2025년 4월 30일”을 “2027년 4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농산업수출진흥과) ① 농 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 1호에 따라 <u>2025년 4월 30일</u> 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 업수출진흥과를 둔다. ② ~ ⑤ (생 략)	제43조(농산업수출진흥과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4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7